

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김 규 남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,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장소,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·문화의 장소, 그리고 지역 경제의 중심 장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. 그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고

있습니다.

- 이에, 정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는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.
- 이에,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“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(안 제2조제8호 신설),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(안 제4조제5호 신설),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